

醫 療 法

[1962. 3. 20 法律第1035號]

改正 1963. 12. 13 法律第1490號

1965. 2. 23 法律第1690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本法은 國民保健의 向上과 國民
醫療의 適正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醫療業者の 種別) 前條의 目的을 達成
하기 위하여 醫療業者로서 醫師·齒科醫師·
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을 둔다.

第3條 (醫師의 任務)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
에 從事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그 任務로 한다

第4條 (齒科醫師의 任務)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하여 國民保健의 向上
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
함을 그 任務로 한다.

第5條 (漢醫師의 任務) 漢醫師는 漢方醫療에
從事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그 任務로 한다.

第6條 (助產員의 任務) 助產員은 正常 分娩의
助產 또는 婦婦解產婦 및 新生兒의 保健과 養
護指導에 從事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그 任務로 한다.

第7條 (看護員의 任務) 看護員은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에
從事하여 國民保健의 向上을 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그 任務로 한다.

第8條 (醫療機關의 種別) 醫療機關은 이를 綜

合病院·病院·醫院·齒科病院·齒科醫院 및
漢醫院으로 區分한다.

第9條 (綜合病院) 本法에서 綜合病院이라 함은
醫療를 行하는 場所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
하는 診療專門科目中 적어도 內科·外科·小
兒科·產婦人科·眼科·耳鼻咽喉科·皮膚科·
泌尿器科·精神神經科·放射線科·臨床病理科
및 齒科로 區分되고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人
員과 施設을 具備한 것을 말한다.

- | | |
|--|---------------------------|
| 1.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人員數의 各 科
專門醫師·齒科醫師·藥師·看護員 및 其他
從業員 | 11. 暖房施設 |
| 2. 各科專門의 診療室 | 12. 紙水施設 |
| 3. 入院室 | 13. 洗濯施設 |
| 4. 手術室 및 產室 | 14. 汚物處理施設 |
| 5. 救急室 및 救急車 | 15. 病理解剖室 |
| 6. 臨床病理檢查施設 | 16. 研究室 |
| 7. 放射線裝置 | 17. 講義室 |
| 8. 調劑室 | 18. 圖書室 |
| 9. 消毒施設 | 19. 其他保健社會部
令으로 定하는 施設 |
| 10. 給食施設 | |

第10條 (病院) 本法에서 病院이라 함은 醫療를
行하는 場所로서 다음 각 號에 該當하는 人員
과 施設을 具備할 것을 말한다.

- | | |
|---|--------|
| 1.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人員數의 醫師·
看護員·藥師 및 其他 從事員 | 4. 手術室 |
| 2. 診療室(診療科目이 2 以上일 때에는 各科
專門의 診療室) | 3. 入院室 |

5. 產室(產婦人科病院인 境遇에 限한다)
6. 救急室 7. 臨床病理検査施設
8. 放射線裝置 9. 調劑室
10. 消毒施設 11. 給食施設
12. 燙房施設 13. 給水施設
14. 洗濯施設 15. 汚物處理施設
16. 其付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施設

第11條 (齒科病院) 本法에서 齒科病院이라 함은 5個以上의 齒科治療臺를 設置하고 齒科醫療를 行하는 場所로서 齒科 專門科目中 적어도 口腔外科·補綴科 및 矯正科로 區分되고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人員數의 齒科醫師 및 其他 從事員과 施設을 具備한 것을 말한다.

第12條 (醫院·齒科醫院·漢醫院) 本法에서 醫院·齒科醫院 또는 漢醫院이라 함은 醫療·齒科醫療 또는 漢方醫療를 行하는 場所로서 患者가 適切한 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設備된 것을 말한다.

第13條 (醫院의 入院患者取扱) 醫院에서 入院患者를 取扱하고자 할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依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但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患者 및 地域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

第2章 資格과 免許

第14條 (醫師·齒科醫師 및 漢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醫師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한 者로서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 學位를 받고 醫師 또는 齒科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2. 國公立大學校 醫科大學에서 醫科大學課程中 最終 2年間 漢方科에서 漢方 醫學을 專攻한 者로서 漢醫學士의 學位를 받고 漢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3.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의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 學位를 받고 本法에 依한 醫師 또는 齒科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4.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의 學校를 卒業한 後 外國의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免許를 받은 外國人으로서 本法에 依한 醫師 또는 齒科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第15條 (助產員의 免許) 助產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看護員의 免許를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에서 1年間 助產의 修習課程을 畢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產免許를 가진 者

第16條 (看護員의 免許) 看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看護員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看護學校를 卒業하거나 外國의 看護員의 免許를 가진 者로서 本法에 依한 看護員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第17條 (免許의 登錄)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의 登錄臺帳을 備置하고 그 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한다.

- ② 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하였을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免許證을 交付한다.
- ③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④ 免許證은 他人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第18條 (缺格事由) 保健社會部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의 免許를 附與하지 아니한다.

1. 精神病者·心神薄弱者
2. 聾者·啞者·盲者
3. 禁治產者·限定治產者·破產宣告를 받고復權되지 아니한 者
4.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看護員으

로서 不適當한 不具廢疾 者.

5. 麻藥・其他 有毒物質의 中毒者.

第19條 (免許의 取消等)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이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1. 醫療關係法令을 違反하여 禁錮以上의 刑을 받았을 때

2. 前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이 甚히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거나 정당한 事由 없이 第4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業務를 정지시킬 수 있다.

第20條 (免許의 再交付 等)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으로서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者라 할찌라도 그 取消 또는 停止의 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였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免許를 再交付하거나 業務의 停止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第21條 削除

第22條 (指導와 命令 및 補修教育)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保健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에 對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關係者の 資質向上을 위하여 諸요한 補修education을 命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補修education에 관하여 諸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3條 醫療審議會

第23條 (醫療審議會)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查審議하게 하기 为하여 保健社會部長官 所屬下에 醫療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4條 (審議會의 組織) ① 審議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醫師會・齒科醫師會・漢醫師會・助產員 및 看護員會에서 각각 推薦하는 者와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名하는 者로써 構成한다. 審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章 醫療業務

第25條 (無免許者의 醫療事務禁止) 醫師가 아니면 醫療를・齒科醫師가 아니면 齒科醫療를・漢醫師가 아니면 漢方醫療를・助產員이 아니면 助產業務를・看護員이 아니면 看護業務를 行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名稱이나 이의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5章 權利와 義務

第26條 (醫療技術에 對한 不干涉) 醫師의 醫療技術・齒科醫師의 齒科醫療技術・漢醫師의 漢方醫療技術・助產員의 助產技術 또는 看護員의 看護技術의 施行에 對하여 本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지 못한다.

第27條 (醫療器材의 押留禁止)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이 그 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材料는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第28條 (器具・藥品施設 等의 優先供給)

-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은 그 醫療 또는 助產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의 施設 및 材料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供給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② 前項의 權利에 附隨되는 物品勞力과 交通機關에도 同一한 權利를 保有한다.

第29條 (營業稅의 免除) 醫師의 醫療業・齒科醫師의 齒科醫療業・漢醫師의 漢方醫療業・助產員의 助產業에 對하여는 營業稅를 免除한다.

第30條 (診療拒否의 禁止) 醫療에 從事하는 醫師・齒科醫師에 從事하는 齒科醫師・漢方醫療에 從事하는 漢方醫師 또는 助產業에 從事하는 助產員은 救急診療 또는 助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31條 (無診察診斷書 等의 交付禁止)

① 醫療·齒科醫療 또는 漢方醫療에 從事하는 醫師 또는 漢醫師는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但 診療中이던 患者가 最後 診療時로 부터 24時間 以內에 死亡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은 自身이 助產하지 아니하고는 出生 또는 死產의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③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아니면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 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이 아니면 出生 또는 死產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第32條 (診斷書 等의 交付義務) ①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診療 또는 檢案하였을 境遇에 診斷書·檢案書 또는 調明書의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 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이 助產하였을 境遇에 出生·死亡 또는 死產 等의 證明書의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도 前項과 같다.

第33條 (秘密의 漏泄禁止)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은 本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醫療·助產 또는 看護上 知得한 患者·姪婦 또는 解產婦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第34條 (記錄閱覽 等에 對한 不應)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은 本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患者에 關한 記錄의 閱覽 또는 記錄의 內容探知에 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5條 (診療簿·助產簿)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및 助產員은 診療簿 또는 助產簿를 備置하고 患者나 姪婦를 診療 또는 助產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診療 또는 助產에 關한 事項과 그 所見을 詳細히 記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診療簿 및 助產簿는 5年間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第6章 專門科目의 標榜과 廣告

第36條 (專門科目의 標榜) ① 醫師 또는 齒科醫

師는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專門醫資格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 標榜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專門科目標榜 및 非專門醫의 診療科目 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7條 (醫療廣告의 禁止)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및 助產員은 그 醫療業 또는 助產業에 關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한 專門科목의 標榜 및 診療科目 표시 以外에 學位·機能·藥效·診療 또는 助產方法·經歷 其他의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特定의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의 技能藥效·診療 또는 助產方法 經歷이나 特定 醫療에 關하여 印刷物·放送 또는 大衆에 對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③ 醫療機關의 標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38條 削除

第7章 醫療機關

第39條 (醫療機關의 開設申告) ①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와 助產員이 助產業을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助產員이 助產業을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0條 (非營利醫療機關의 開設許可) ① 醫師·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아닌 者로서 营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醫療機關開設者는 그 醫療機關이 醫療를 目的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醫師·齒科醫療를 主目的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齒科醫師·漢方醫療를 主目的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漢醫師에게 그 醫療機關을 管理

시켜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醫療機關의 開設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한다.

第41條 (構造 또는 施設의 變更)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그 醫療機關의 構造 또는 施設에 關하여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42條 (醫療機關의 休業·廢業再開業의 申告)

①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助產員이 그 醫療 또는 助產業務를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開設者 또는 助產員이 死亡하였을 때에는 그 相續人은 死亡日로부터 30日以內에 申告하여야 한다. 但 相續인이 없을 때에는 當該醫療關係者團體의 長이 代行하여야 한다.

第43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① 第9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醴療機關은 각각 當該 規定에 依한 名稱以外의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② 醴療機關이 아니면 醴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44條 (醫療機關의 規格 및 施設基準) 醴療機關의 規格施設基準 및 監督上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45條 (報告와 業務檢查 等)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는 醴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醴療機關의 開設者에 對하여 所定의 報告를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醴療機關에 臨檢하여 그 業務狀況 또는 診療簿 其他 關係書類를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에 關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④ 醴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및 看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그 實態와 就業狀況 等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6條 (醫事監視員) ① 前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 為하여 保健社會部 및 서울特別市·釜山市·道에 醴事監視員을 둔다.

② 醴事監視員의 資格·任命·定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③ 醴事監視員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職務上 知得한 醴療業者の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④ 職務上 前項의 秘密을 知得한 其他 公務員도 前項에 準한다.

第47條 (醫療機關의 宿直醫師) 綜合病院·病院 또는 齒科病院의 開設者나 管理者は 宿直醫師 또는 宿直齒科醫師를 두어야 한다.

第48條 (非營利醫療機關에 對한 經費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開設된 醴療機開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49條 (施設의 使用制限) 醴療機關의 構造 또는 施設이 第9條 乃至 第12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違反되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는 醴療機關의 開設者에 對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의 使用을 制한하거나 禁止할 수 있으며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修繕改築을 命할 수 있다.

第50條 (開設許可의 取消 및 停業閉鎖命令 等)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는 醴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業務의 정지 또는 醴療機關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1. 開設申告를 하거나 開設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지나도록 정당한 理由 없이 그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할 때

2. 前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

3. 第17條 第4項·第25條·第36條·第42條의 規定을 違反하였을 때

②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醴療機關의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醴療機關의 開設申告를 申請할 수

없다.

第51條 (醫療報酬)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또는 助產員이 患者·產婦로부터 徵收하는 醫療 報酬에 關하여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8 章 公 醫

第52條 (公醫) ① 地方의 醫療施策 또는 無醫地 域에 醫療普及 上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地方에 醫師의 資格을 가진 者를 公醫로 配置할 수 있다.

② 公醫는 配置地에 居住하며 그 地方에서 醫業을 開設하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指揮監督을 받아야 한다.

第53條 (公醫의 業務) 公醫는 患者를 診療하는 以外에 다음 各號의 業務에 從事하여야 한다.

1. 傳染病의 豫防·國民保健의 向上과 環境衛 生 改善에 必要한 事項
2. 地方病 調查와 撲滅에 關한 事項
3.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 市長·道知事が 指示하는 公共醫療 및 豫防 醫學에 關한 事項

第54條 (公醫의 報酬 및 旅費)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은 公醫에게 所定의 報酬旅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55條 (公醫에 對한 經費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公醫의 醫療機關開設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 9 章 國家試驗

第56條 (國家試驗)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및 看護員의 國家試驗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年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第57條 (應試資格의 制限) 第18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醫師·齒科醫師·漢醫師 및 看護員 國家試驗에 應試하지 못한다.

第 10 章 醫療關係者團體와 權限委任

第58條 (中央團體) ① 醫師·齒科醫師·漢醫師 助產員 및 看護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 하여 각各 中央에 醫師會·齒科醫師會·漢 醫師會·助產員會 및 看護員會(以下 中央會라稱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되었을 때에는 醫師·齒科醫師·漢醫師 助產員 및 看護員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 中央會의 會員이 되어야 한다.

④ 中央會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한 外에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中央會는 그 運營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相互統合할 수 있다.

第59條 (設立認可 等) ① 中央會을 設立하였을 때에는 그 代表者は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款 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고 그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中央會의 定款記載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0條 (中央會의 支部) ①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와 道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區(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市·郡에 分會를 設置할 수 있다.

② 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하였을 때에는 漏滯없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 또는 區廳長·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1條 (協助의 義務) 中央會는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國民 保健의 向上에 必要한 事業에 對한 協助의 要請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62條 (監督)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가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한 協助의 要請에 不應하거나 國民保健의 向上에 障碍가 되는 行爲를 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件員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第63條(經費補助) 保健社會部長官은 中央會의事業이 國民保健의 向上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看護員에게 醫療上의 調査와 研究를 委囑하였을 때에는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64條(權限의 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本法에 依한 그 權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11 章 罰 則

第65條(罰則) 第17條 第4項·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5年 以下의 徵役 또는 10만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66條(同前) 醫師·齒科醫師·漢醫師·助產員 또는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2年 以下의 徵役 또는 6만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業務의 停止 또는 閉鎖處分에 違反하였을 때
2. 第33條 및 第37條 第 1項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

第67條(同前)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6月 以下의 徵役 또는 2만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30條 乃至 第32條·第34條·第36條 第1項·第39條·第40條 第 1項 및 第2項·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5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報告를 하거나 關係公務員의 臨檢이나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이나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52條·第5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68條(同前) 第35條·第37條 第2項 및 第3項·第41條·第42條·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만원 以下の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6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5條乃至 第68條의 違反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9條의 2(限地醫療業者 等)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限地醫師·限地齒科醫師 또는 限地漢醫師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地域 안에서 醫療·齒科醫療 또는 漢方醫療業務를 할 수 있다.

第 12 章 雜 則

第70條(施行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 ①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本法 施行當時 醫師·齒科醫師·漢醫師·國家試驗應試資格檢定試驗 規程 및 保健員·助產員·看護員·資格試驗規程에 依하여 1科目 以上 合格한 者는 本法 施行日로 부터 2年間 從前規定에 依하여 當該 試驗에 應試할 수 있으며 合格한 者는 本法 第2章의 節次를 거쳐 그 免許를 받을 수 있다.
- ③ 本法 施行當時의 醫師·限地醫師·齒科醫師·限地齒科醫師·漢醫師·限地漢醫師·保健員·助產員·看護員 및 醫療類似業者의 免許 및 資格과 其他 醫療上의 權利는 本法에 依하여 取得한 것으로 看做한다.
- ④ 限地醫師·限地齒科醫師·限地漢醫師에 對하여는 本法을 準用하며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한 地域을 離脫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고 醫療類似業者에 對하여는 本法中 第27條·第65條 乃至 第68條의 規定에 準用한다.
- ⑤ 本法施行當時 本法은 第 8 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醫療機關에 該當하는 것은 本法에 依하여 開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但 그 規格과 施設이 本法에 依한 基準에 未達하는 醫療機關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90日 以內에 그 基準에 適合하도록 改修 또는 補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開設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⑥ 從前의 漢醫科大學의 在學生은 卒業과 同時に 從前의 漢醫師國家試驗規定에 依하여 免許를 交付한다.

附 則<1963. 12. 13 法律第1490號>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1965. 3. 23 法律 第1960號>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次號 醫療法施行令·醫療法施行規則).